

의안번호	2203279
의 퇴 인	임광현의원
회 답 일	2024.9.9.
추계번호	24E32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1조 1,538억원, 2029년 7,730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4조 2,583억원(연평균 8,517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기본공제 연령기준 상향 (안 제50조제1항)	-11,538	-8,329	-7,416	-7,571	-7,730	-42,583	-8,517

주: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 완화 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규모도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대한 세수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기본공제대상자 수 변화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완화 - (현행) 20세 이하 → (개정안) 25세 이하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징수기준)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변화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따른 세수변화분을 추계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과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연동¹⁾되어있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이 완화되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의 신청자수 및 공제대상 자녀수도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대한 세수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1)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기본공제) 2022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각각 36.5조원, 24.1조원으로 각각 2017~2022년 동안 연평균 3.4%, 7.0% 증가

[표 2]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적용인원	11,353	12,109	12,237	12,916	13,629	12,449
(증가율)	(7.0%)	(6.7%)	(1.1%)	(5.5%)	(5.5%)	(5.1%)
공제금액	324,554	340,508	342,641	353,294	364,928	345,185
(증가율)	(5.1%)	(4.9%)	(0.6%)	(3.1%)	(3.3%)	(3.4%)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적용인원	6,905	7,463	7,844	9,334	10,270	8,363
(증가율)	(7.9%)	(8.1%)	(5.1%)	(19.0%)	(10.0%)	(9.9%)
공제금액	180,484	189,941	193,490	223,350	240,548	191,745
(증가율)	(5.3%)	(5.2%)	(1.9%)	(15.4%)	(7.7%)	(7.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자녀세액공제) 2022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각각 5,386억원, 3,118억원임
 -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제도변화(대상자 축소) 이후 3년간(2019~2022년) 연평균 1.2% 증가
 -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제도변화(대상자 축소) 이후 3년간(2019~2022년) 연평균 2.1% 증가
 - 자녀세액공제는 2017년까지 기본공제,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 6세 이하 추가공제가 폐지되어 기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만 적용

- 2019년부터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2023년부터는 8세 미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폐지

[표 4]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 근로소득세,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19~2022 연평균
적용인원 (증가율)	2,654 (2.2%)	2,115 (-20.3%)	2,124 (0.4%)	2,153 (1.4%)	2,207 (2.5%)	2,161 (1.4%)
세액공제금액 (증가율)	7,064 (-3.9%)	5,200 (-26.4%)	5,185 (-0.3%)	5,259 (1.4%)	5,386 (2.4%)	5,277 (1.2%)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19~2022 연평균
적용인원 (증가율)	1,381 (2.3%)	1,168 (-15.5%)	1,117 (-4.4%)	1,213 (8.7%)	12,40 (2.2%)	1,190 (2.0%)
세액공제금액 (증가율)	3,747 (2.1%)	2,932 (-21.7%)	2,802 (-4.5%)	3,034 (8.3%)	3,118 (2.8%)	2,985 (2.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자(소득세 신고자) 수 및 공제금액 자료를 제공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완화될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적용자 수 및 이들의 공제대상 자녀 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통계연보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1년 귀속)²⁾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세수효과 추계

2) 재정패널조사 2022년 조사자료는 2021년 가계의 소득과 지출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연도에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 경제활동상태, 소득, 가계지출현황, 복지현황 등을 조사하는 패널자료임

-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소득규모(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별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한 후, 개정안에 따른 소득규모별 공제금액 변화분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 자녀세액공제도 기본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실험분석결과 활용, 출산입양공제는 연령기준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3) 추계 결과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2년 기준 6,7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기본공제 규모 확대로 4,714억원, 자녀세액공제 규모 확대로 2,033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추계함에 따라 2022년 기준 세수효과 제시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2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3,032	-1,073	-4,104
종합소득세	-1,682	-960	-2,643
합계	-4,714	-2,033	-6,747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기본공제의 경우 최근 4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의 평균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하며,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향후 제도변화를 반영한 증가율 적용
 - (기본공제) 근로소득세 1.8%, 종합소득세 3.1%의 증가율 적용
 - (자녀세액공제) 2019년부터 7세 이상 자녀로 대상이 축소되었고, 2023년부터 8세 이상으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2022년 이후는 2019~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근로소득세 1.2%, 종합소득세 2.1%)로 증가하고, 2023년은 추가적으로 7~25세 이상 인구에서 7세가 차지하는 비율(2023년 4.5%)만큼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

[표 7]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	세수효과
	기본공제금액 ¹⁾	기본공제금액 ²⁾	현행 공제금액 대비 변화율(%) ³⁾⁴⁾			
	A	$B=A \times (1+C\%)$	C	$D=B-A$	E	$F=-(D \times E)$
합계	292,632	307,231	-	14,599	-	-3,032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1,727	1,751	1.4	24	6%	-1
2천만 이하	8,046	8,158	1.4	112	6%	-7
3천만 이하	34,343	35,386	3.0	1,043	6%	-63
4천만 이하	34,747	35,872	3.2	1,125	15%	-169
4.5천만 이하	18,241	19,013	4.2	773	15%	-116
5천만 이하	18,540	19,343	4.3	803	15%	-120
6천만 이하	35,985	37,815	5.1	1,830	15%	-275
8천만 이하	57,790	60,657	5.0	2,866	15%	-430
1억 이하	37,329	39,737	6.5	2,409	24%	-578
2억 이하	41,437	44,814	8.1	3,376	35%	-1,182
3억 이하	3,150	3,317	5.3	167	38%	-64
5억 이하	959	1,010	5.3	51	40%	-20
10억 이하	283	298	5.3	15	42%	-6
10억 초과	55	58	5.3	3	45%	-1

주: 1)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기준의 기본공제금액 추정치로,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국세청 제공)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 산출

4)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분석이 불가하므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변화율(5.3%)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8]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종합소득 규모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	세수효과
	기본공제금액 ¹⁾	기본공제금액 ²⁾	현행 공제금액 대비 변화율(%) ³⁾⁴⁾			
	A	$B=A \times (1+C\%)$	C	$D=B-A$	E	$F=-(D \times E)$
합계	189,401	198,268	-	8,867	-	-1,682
1천만 이하	-	-	2.0	662	6%	-40
2천만 이하	33,812	34,473	2.6	1,122	6%	-67
3.5천만 이하	43,882	45,004	4.2	1,743	15%	-261
4천만 이하	41,590	43,333	5.0	435	15%	-65
5천만 이하	8,743	9,178	8.3	1,061	15%	-159
6천만 이하	12,842	13,903	5.7	532	15%	-80
8천만 이하	9,348	9,880	6.5	817	24%	-196
1억 이하	12,569	13,385	10.5	793	24%	-190
2억 이하	7,539	8,332	8.9	1,134	35%	-397
3억 이하	12,700	13,834	8.9	267	38%	-102
5억 이하	2,992	3,259	8.9	170	40%	-68
7억 이하	1,908	2,079	8.9	58	42%	-24
10억 이하	644	702	8.9	35	42%	-15
10억 초과	393	429	8.9	39	45%	-18

주: 1)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기본공제금액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에 결정세액 있는 자 수를 곱하여 추계
 2) 현행 종합소득규모별 기본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 산출
 4) 종합소득금액 2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분석이 불가하므로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변화율(8.9%)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9]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공제금액 ¹⁾	개정안 공제금액 ²⁾	현행 대비 개정안의 변화율(%) ³⁾⁴⁾	세수효과
	A	B	C	D=A-B
합계	4,510	5,582	-	-1,073
1천만 이하	-	-	-	-
1.5천만 이하	-	-	-	-
2천만 이하	4	5	26.1	0.0
3천만 이하	21	29	38.0	-8.0
4천만 이하	139	171	23.1	-32.2
4.5천만 이하	163	201	23.7	-38.5
5천만 이하	227	279	23.1	-52.3
6천만 이하	588	717	22.1	-129.6
8천만 이하	1,319	1,551	17.6	-232.1
1억 이하	908	1,155	27.3	-247.4
2억 이하	1,032	1,345	30.3	-312.7
3억 이하	82	96	17.4	-14.3
5억 이하	23	27	17.4	-4.1
10억 이하	7	8	17.4	-1.2
10억 초과	1	2	17.4	-0.2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를 제외한 인원 기준의 세액공제금액 추정치로, 총급여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국세청 제공)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총급여규모별 자녀세액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변화율 산출

4)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 수행이 불가하므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변화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공제금액	개정안 공제금액 ¹⁾	현행 대비 개정안의 변화율(%) ²⁾³⁾	세수효과
	A	B	C	D=A-B
합계	3,080	4,041	-	-960
1천만 이하	305	427	40.0	-122
2천만 이하	605	846	40.0	-242
3.5천만 이하	687	910	32.5	-223
4천만 이하	156	195	24.6	-38
5천만 이하	242	306	26.6	-64
6천만 이하	190	237	24.6	-47
8천만 이하	280	358	27.7	-78
1억 이하	168	208	24.2	-41
2억 이하	290	358	23.7	-69
3억 이하	72	89	23.7	-17
5억 이하	48	59	23.7	-11
7억 이하	17	21	23.7	-4
10억 이하	10	13	23.7	-2
10억 초과	11	14	23.7	-3

주: 1) 현행 종합소득규모별 자녀세액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2)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변화율 산출
 3)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변화율의 추계가 일정치 않아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 증가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 산정책처 작성

-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4조 3,831억원(연평균 7,3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4,190	-4,259	-4,329	-4,401	-4,473	-4,547	-26,200	-4,367
종합소득세	-2,743	-2,819	-2,896	-2,975	-3,057	-3,141	-17,632	-2,939
합계	-6,934	-7,078	-7,225	-7,376	-7,530	-7,688	-43,831	-7,305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³⁾ 소득세수는 2025년 1조 1,53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4조 2,583억원(연평균 8,5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5년은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25년 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가 동시 발생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7,385	-5,394	-4,401	-4,473	-4,547	-26,200	-5,240
종합소득세	-4,153	-2,935	-3,015	-3,098	-3,183	-13,200	-3,300
합계	-11,538	-8,329	-7,416	-7,571	-7,730	-42,583	-8,517

주: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 완화 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규모도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대한 세수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기본공제대상자 수 변화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5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다만, 2025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25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12(9개월분)가 반영되고, 나머지 3/12(3개월분)은 2026년(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며, 2026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